



제427회국회(임시회)
제3차 환경노동위원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퇴직연금제도 자산관리 업무계약 방법에 공제계약 추가 >

■ 윤건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8953호)

2025. 7.

환 경 노 동 위 원 회

전문위원 한석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퇴직연금제도 자산관리 업무계약 방법에 공제계약 추가	2

I. 제안경위

2025년 3월 14일 윤건영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5년 3월 1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퇴직연금사업자와 퇴직연금 자산관리업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려고 할 때, 계약방법을 보험계약 또는 신탁계약에 한정하고 있습니다.

신용협동조합중앙회는 퇴직연금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는 재무건전성 및 인적·물적 요건을 갖추고 있음에도 현행법상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 또는 가입자와 퇴직연금사업자가 체결하는 퇴직연금의 자산관리계약을 보험계약과 신탁계약에 한정하고 있어, 퇴직연금사업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에 공제사업을 수행하는 신용협동조합중앙회가 퇴직연금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퇴직연금 자산관리업무 계약방법에 공제계약을 추가하여 퇴직연금제도 수요자의 선택 폭을 넓히고, 기존 보험회사 등에 비해 저렴한 비용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퇴직연금사업을 개선하고자 합니다(안 제29조제2항).

Ⅲ. 검토의견

1. 퇴직연금제도 자산관리 업무계약 방법에 공제계약 추가(안 제29조제2항)

가. 개정안의 주요내용

개정안은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퇴직연금사업자와 퇴직연금 자산관리업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의 계약방법을 보험계약 또는 신탁계약 외에 공제계약도 추가하는 내용임(안 제29조제2항).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9조(자산관리업무에 관한 계약의 체결) ① (생략)	제29조(자산관리업무에 관한 계약의 체결) ① (현행과 같음)
②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 또는 가입자를 <u>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계약 또는 신탁계약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u>	② ----- ----- ----- <u>피보험자, 피공제자 또는 수익자</u> ----- ----- <u>보험계약, 공제계약 또는 신탁계약</u> ----- -----.

나. 검토의견

현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6조¹⁾와 동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르면 퇴직연금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는 대상을 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또는 집합투자업자, ② 「보험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보험회사, ③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④ 「신용협동조합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신용협동조합중앙회, ⑤ 「새마을금고법」 제2조제3항에 따른 새마을금고중앙회, ⑥ 근로복지공단(공단의 퇴직연금사업 대상은 상시 30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한정), ⑦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탁업 인가를 받은 자로서 재무건전성 및 인적·물적 요건 등을 갖춘 자로 제한하고 있음.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퇴직연금사업자와 운용관리계약²⁾

- 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6조(퇴직연금사업자의 등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퇴직연금사업자가 되려는 자는 재무건전성 및 인적·물적 요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또는 집합투자업자
 2. 「보험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보험회사
 3.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4. 「신용협동조합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신용협동조합중앙회
 5. 「새마을금고법」 제2조제3항에 따른 새마을금고중앙회
 6. 공단(공단의 퇴직연금사업 대상은 상시 30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한정한다)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준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8조(운용관리업무에 관한 계약의 체결) ①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 또는 가입자는 퇴직연금사업자와 다음 각 호의 업무(이하 “운용관리업무”라 한다)를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2의 업무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할 때에만 해당하고, 제2호의 업무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할 때에만 해당한다.
 1. 사용자 또는 가입자에 대한 적립금 운용방법 및 운용방법별 정보의 제공
 - 1의2. 사전지정운용제도의 설정 및 운영에 관한 업무
 2. 연금제도 설계 및 연금 회계처리
 3. 적립금 운용현황의 기록·보관·통지
 4.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선정한 운용방법을 제29조제1항에 따른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

및 자산관리계약³⁾을 체결해야 하는바, 이는 사용자의 법적인 의무로서 동 업무를 위탁하지 않는 경우 법 위반에 해당되어 제35조⁴⁾에 따른 시정명령의 대상이 됨.⁵⁾⁶⁾

직연금사업자에게 전달하는 업무

5. 그 밖에 운용관리업무를 적절한 수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 ② 제1항에 따라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 업무를 인적·물적 요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에게 처리하게 할 수 있다.
- 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9조(자산관리업무에 관한 계약의 체결) ①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 또는 가입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이하 “자산관리업무”라 한다)의 수행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퇴직연금사업자와 체결하여야 한다.
 1. 계좌의 설정 및 관리
 2. 부담금의 수령
 3. 적립금의 보관 및 관리
 4.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가 전달하는 적립금 운용지시의 이행
 5. 급여의 지급
 6. 그 밖에 자산관리업무를 적절한 수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 또는 가입자를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계약 또는 신탁계약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 4)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5조(사용자에 대한 감독)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용자가 퇴직연금제도의 설정 또는 그 운영 등에 관하여 이 법 또는 퇴직연금규약 및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표준계약서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위반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퇴직연금제도 운영의 중단을 명할 수 있다.
- 5)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와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가 동일하지 않을 수 있음.
- 6) 현행법상 퇴직연금제도의 설정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거나 의견을 들어 설정할 수 있고, ①퇴직연금규약 작성 → ②운용관리·자산관리업무 계약체결 → ③부담금 납입 → ④적립금 운용 → ⑤퇴직급여지급의 순서에 따라 퇴직연금제도가 운영됨.

[표] 퇴직연금제도 운영흐름

구분	주요 내용
①퇴직연금 규약 작성	-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청취 또는 동의를 얻어 퇴직연금제도 설정: 퇴직연금규약 작성 및 신고(사업 본사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 '12.7.26. 이후 새로 성립된 사업의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청취
②운용관리·자산관리업무 계약체결	- 사용자는 퇴직연금사업자와 운용관리·자산관리업무계약 체결 ※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와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가 동일하지 않을 수 있음
③부담금 납입	- 사용자는 근로자 퇴직 시 퇴직급여 지급을 위한 재원을 퇴직연금사업자에 납입 - 퇴직연금사업자는 적립금을 안전하게 보관
④적립금 운용	- 사용자가 납입한 부담금을 사용자(DB제도) 또는 근로자(DC제도)가 운용

이 중 자산관리계약은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재원인 적립금을 사용자로부터 독립되어 안전하게 보관·관리하기 위한 장치로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9조제2항에서는 자산관리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계약 또는 신탁계약의 방법’으로 하도록 하고, 동법 시행령 제24조7)에서는 자산관리업무 수행계약의 형태를 ①「보험업법」 제108조에 따른 특별계정으로 운영하는 보험계약 또는 ②「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3조제1호에 따른 특정금전신탁계약의 방법만 허용하고 있음.

[표] 자산관리업무 계약의 형태

- ☐ “특별계정으로 운영하는 보험계약” 또는 “특정금전신탁계약” 방법만 허용
- (특별계정의 보험계약) 특별계정은 보험사업자가 특정 계약의 손익을 구별하기 위하여 별도 계정을 설정하여 운용하는 것으로, 계약자가 납입하는 부담금을 가입자의 운용지시에 따라 운용한 후 가입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형태의 보험계약

(사용자, 근로자)	
⑤퇴직급여 지급	- 근로자는 퇴직 후 퇴직연금사업자로부터 퇴직급여 수령 * IRP제도의 계정으로 이전

7)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24조(자산관리업무 수행계약의 형태) 법 제2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계약 또는 신탁계약”이란 「보험업법」 제108조에 따른 특별계정으로 운영하는 보험계약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3조제1호에 따른 특정금전신탁계약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1.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적립금이 기준책임준비금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고 사용자가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퇴직연금사업자는 사용자에게 그 초과분을 반환할 것
2. 급여는 가입자가 퇴직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일 것
3. 가입자가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하여 직접 급여를 청구할 수 있을 것.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가입자는 급여를 청구할 수 없으며, 그 적립금은 사용자에게 귀속되는 것이어야 한다.
4.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적립금은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것일 것.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가입자에 대한 적립금은 사용자에게 귀속되는 것이어야 한다.

○ (특정금전신탁계약) 위탁자가 금융회사(수탁자)에게 신탁재산(금전)을 이전하고, 위탁자의 운용지시*에 따라 수탁자가 재산을 운용하여 수익자에게 운용수익을 배당하는 형태의 신탁계약

* 불특정금전신탁의 경우 신탁재산의 운용방법 등을 위탁자가 아닌 신탁회사가 정함. 금융위는 '04년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도입과 함께 불특정금전신탁을 간접투자방법으로 규정하고 부실투자 등을 우려하여 신규 판매를 금지하고 특정금전신탁만을 허용

이때 신용협동조합중앙회와 새마을금고중앙회는 퇴직연금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는 대상에 포함되어 있음에도 자산관리업무 계약의 형태의 제한(특별계정으로 운영하는 보험계약 또는 특정금전신탁계약)으로 인해 자산관리계약을 체결할 수 없음⁸⁾.

이에 개정안은 현행법상 자산관리업무 수행계약의 형태에 공제계약을 추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자산관리업무 수행계약 형태의 제한으로 인해 퇴직연금사업자의 등록자격이 있음에도 자산관리계약 체결 주체에서 배제되고 있는 신용협동조합중앙회 등이 자산관리계약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가입자의 선택권을 확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입법에 의의가 있음.

다만, 현행법상 퇴직연금제도에서 자산관리업무 수행계약의 형태를 보험계약과 신탁계약으로 한정하고 있는 이유는 퇴직연금제도 적립금이

8)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6조(퇴직연금사업자의 등록) 규정에 신용협동조합중앙회와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추가된 것은 2008. 3. 28. 법률 개정을 통해서 인 바, 당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률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177318호)에서는 퇴직연금사업자의 등록 대상에 신용협동조합중앙회를 추가하고, 자산관리업무 수행에 있어 공제계약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공제사업은 「보험업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보험사에 비해 금융당국의 감독이 엄격하지 않다는 이유 등으로 공제계약 부분을 삭제하는 수정안으로 개정됨.

사업 및 금융기관 도산 시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인 근로자에게만 지급 되도록 하는 등⁹⁾ 가입자에 대한 보호를 충실히 하기 위한 것임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신용협동조합중앙회와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신용협동조합법」과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공제사업을 할 수 있는바, 공제는 사고나 질병 등 발생에 따른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하고, 일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 금전 등을 지급할 것을 약정한다는 점에서 보험과 유사한 경제적 기능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음.

그러나 신용협동조합중앙회의 근거법인 「신용협동조합법」 제6조제1항¹⁰⁾에 따라 조합과 중앙회의 공제사업에 관하여는 보험사업에 대한 감독 및 규제법인 「보험업법」의 적용이 배제되고 있어 금융 감독·가입자 보호의 측면에서 타 계약방식보다 미흡할 우려가 있다는 점,¹¹⁾ 공제와 보험은 법적 설립근거·운영 목적·기초재산·계약 대상 및 관리·감독체계 등에 있어 차이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자산관리업무

9) 고용노동부, 「퇴직급여제도 매뉴얼(2022)」 116쪽

10) 「신용협동조합법」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조합과 중앙회의 공제사업에 관하여는 「보험업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조합 간의 합병 등에 관하여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5조제9항을 적용한다.

③ 제78조제1항제5호다목(내국환 업무로 한정한다) 및 라목에 따른 중앙회의 신용사업 부문은 「은행법」 제2조에 따른 은행 및 「한국은행법」 제11조에 따른 하나의 금융기관으로 본다.

④ 조합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의2를 적용할 때에는 같은 조의 적용을 받는 자로 본다.

11) 이에 대하여 신용협동조합회는 신협의 공제사업은 보험사와 동일하게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의 검사·감독을 받고 있는 등 보험사에 준하는 가입자 보호장치가 마련되어 있다는 입장임. 다만 「신용협동조합법」 제97조제1항에 따라 조합과 중앙회가 공제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공제규정을 정하여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도록 되어 있어 내부규정인 공제규정을 토대로 공제사업이 운영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보험업법」상의 금융감독 및 가입자 보호에 대한 규제장치와 일치하는 수준의 규제 장치라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수행계약 형태에 공제계약을 포함할 경우 공제계약에 대한 가입자 보호 장치 마련 등에 관한 추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개정안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는 공제사업의 본래 목적은 조합원 간 상호부조이므로, 회원만이 아닌 전체 기업 및 근로자를 대상으로 노후 소득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퇴직연금 제도와는 목적이 다르고, 「신용협동조합법」상 공제사업은 조합원을 위한 복지사업으로 한정되어 있어, 퇴직연금 사업 수행은 신용협동조합중앙회 본래의 설립 취지와 부합하지 않으며, 신용협동조합중앙회의 공제는 보험과 유사하나 보험사업에 대한 감독 및 규제법인 「보험업법」의 적용이 배제되고 있어 금융 감독 및 가입자 보호 측면에서 미흡할 우려가 있으므로,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 재원 형성을 목표로 하는 퇴직연금의 취지를 감안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¹²⁾

문 의 처
02)6788-5540

12) 다만, 신용협동조합회는 2024년 말 기준 신협의 지급여력비율은 333.7%로 우량하고, 책임준비금의 종류·세부적립기준 및 적정성 평가 등에 있어 보험사와 동일한 수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신협법에 따른 예금자보호기금을 통해 보험사와 동일 한도로 공제금을 보장하고 있어 가입자 보호장치가 충분한 상황이라고 설명함. 또한 신협공제는 협동조합 이념을 기반으로 하여 보험사 대비 저렴한 비용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퇴직연금 상품도 낮은 수수료율로 운영 예정인바, 퇴직연금 가입자의 복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으며, 신협의 주거대출이 서민 및 중소기업 등인 점을 고려하면 소규모 사업장의 퇴직연금제도 가입율 제고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함.

퇴직급여법 제26조(퇴직연금사업자의 등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퇴직연금사업자가 되려는 자는 재무건전성 및 인적·물적 요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또는 집합투자업자
2. 「보험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보험회사
3.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4. 「신용협동조합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신용협동조합중앙회
5. 「새마을금고법」 제2조제3항에 따른 새마을금고중앙회
6. 공단(공단의 퇴직연금사업 대상은 상시 30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한정한다)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준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제28조(운용관리업무에 관한 계약의 체결) ①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 또는 가입자는 퇴직연금사업자와 다음 각 호의 업무(이하 “운용관리업무”라 한다)를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2의 업무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할 때에만 해당하고, 제2호의 업무는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할 때에만 해당한다.

1. 사용자 또는 가입자에 대한 적립금 운용방법 및 운용방법별 정보의 제공
 - 1의2. 사전지정운용제도의 설정 및 운영에 관한 업무
 2. 연금제도 설계 및 연금 회계처리
 3. 적립금 운용현황의 기록·보관·통지
 4.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선택한 운용방법을 제29조제1항에 따른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전달하는 업무
 5. 그 밖에 운용관리업무의 적절한 수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 ② 제1항에 따라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 업무를 인적·물적 요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에게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29조(자산관리업무에 관한 계약의 체결) ①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 또는 가입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이하 “자산관리업무”라 한다)의 수행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퇴직연금사업자와 체결하여야 한다.

1. 계좌의 설정 및 관리
 2. 부담금의 수령
 3. 적립금의 보관 및 관리
 4.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가 전달하는 적립금 운용지시의 이행
 5. 급여의 지급
 6. 그 밖에 자산관리업무의 적절한 수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 ②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 또는 가입자를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계약 또는 신탁계약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24조(자산관리업무 수행계약의 형태) 법 제2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계약 또는 신탁계약”이란 「보험업법」 제108조에 따른 특별계정으로 운영하는 보험계약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3조제1호에 따른 특정금전신탁계약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1.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적립금이 기준책임준비금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고 사용자가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퇴직연금사업자는 사용자에게 그 초과분을 반환할 것
2. 급여는 가입자가 퇴직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일 것
3. 가입자가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하여 직접 급여를 청구할 수 있을 것.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가입자는 급여를 청구할 수 없으며, 그 적립금은 사용자에게 귀속되는 것이어야 한다.
4.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적립금은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것일 것.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가입자에 대한 적립금은 사용자에게 귀속되는 것이어야 한다.